

제3145호
2024. 11.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5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12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장 연임제한 및 신청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봉사자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통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장 연임제한 완화 (안 제2조)
- 나. 통장 신청 자격 요건 완화 (안 제3조)
- 다. 통장 신청 시 추천제 도입 (안 제6조)
- 라. 어려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마. 관련 서식 정비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52, FAX : 02-3396-8612, 전자우편 : its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임기간”을 “연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호”를 각각 “각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제3조제4항제1호 중 “이 외”를 “이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심신장애등”을 “심신장애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선지지”를 “당선 지지”로, “물품전달, 업무보조”를 “물품 전달, 업무 보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추천에 의하여”를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동 공고 제 호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통

- 통 명: ○○동 ○○통
- 관할구역:

□ 접수 기간:

□ 통장신청 자격요건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반장 2명 이상 추천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 연서
-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동 주민센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통장 후보자 신청서

본인은 _____ 동 제 _____ 통장 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통장
---	----

신 청 자	한 글		생년월일 (연령)	- - (만 세)	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cm)
	한 자		성 별	남 / 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해 당 통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010 - -	자 택	02 - -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위			
<p>위와 같이 중구 _____ 동 제 _____ 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위 신청인 성명 : (서명)</p> <p>서울특별시 중구 _____ 동장 귀하</p>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자기소개서

□ 본인소개, 지원동기, 통장 선출 시 봉사계획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_ 동장 귀하

추천서

○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 추천인 경우

연 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 해당 통 반장 2명 이상 추천인 경우 :

연 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날인
1	통	반장		
2	통	반장		
3	통	반장		
4	통	반장		

서울특별시 중구 _____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 통장후보자 자격확인 및 심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자택·전자우편), 직업, 직위, 약력 (주요경력·봉사활동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에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력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통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동 제 통)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 -	연락처	자택)
주소	도로명주소)						휴대폰)

□ 심사항목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 점	점 수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거주기간 • 추천내용 •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 	20	
업무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 사회경력 •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 	30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직능단체 참여도 등 • 반장 경력 유무 	30	
봉사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참여(봉사기간, 봉사내용) • 표창 수상 여부 등 •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20	
총 점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명 (서명)

※ 위원장은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기 항목 외의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신규신청자는 총점의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 -- 2회-----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생략)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② ----- 각호----- ----- ----- 각호----- -----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설 통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요하지 않음)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④ ----- -----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1. ----- 이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신장애 등-----
4. (생략)	4. (현행과 같음)

<p>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경우</p>	<p>5. ----- ----- <u>당선 지지</u> ----- -- <u>물품 전달, 업무 보조</u> -----</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p>제4조(명예반장) ① (생략)</p>	<p>제4조(명예반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p>	<p>② ----- <u>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u> ---.</p>
<p>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 ----- <u>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u>---</p>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통장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과장: 행정5급 이창훈, 팀장: 행정6급 박유진, 담당: 행정6급 최유진						
4. 근거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통장 신청자						
6. 규제 존속기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신설 규제》 ○ 통장 신청 시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서 필수 첨부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해당 통 주민(세대주 또는 반장)의 추천을 통해 사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 능력이 우수한 통장을 선발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해당 통의 주민 추천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통장 선발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통장 신청 시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수치화 하였으며, 규제 대상이 명료함

5.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